

**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-019호**  
**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**

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 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2. 28.

방송통신위원회

---

# 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

---

2023. 2.



방송통신위원회

# 1

## 개 요

### □ 추진 배경

- 핀테크, IT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
-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,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'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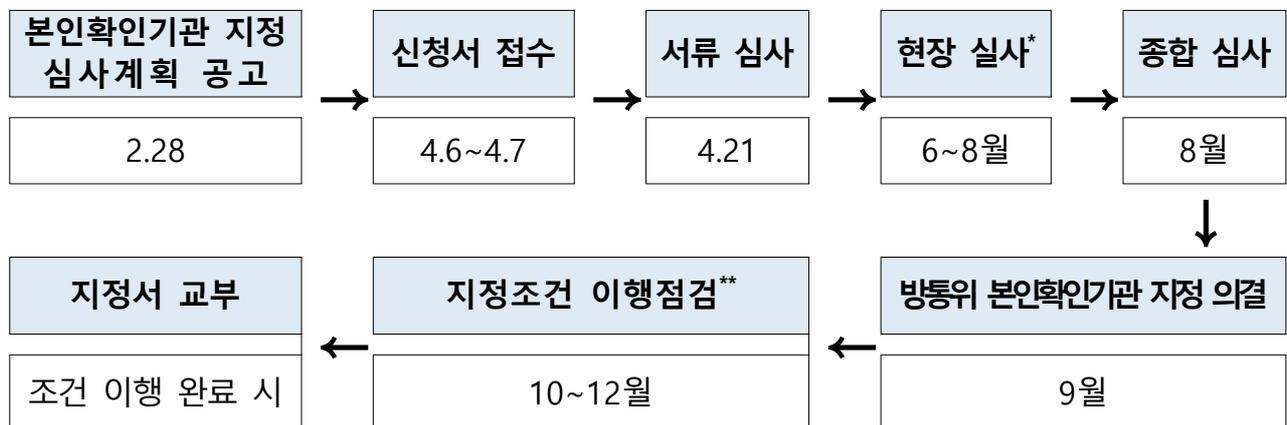
### □ 주요 경과

-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\*」(고시) 개정 '22. 1월  
\* 심사항목 재구성, 지정 기준 개선 등
- '22년도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지정 의결(국민은행 등 4사)'22. 6월
- '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'23. 2. 3

# 2

## 심사 일정

### □ 전체 일정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

\*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

\*\* 조건부 지정 시,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

## □ 신청서 접수

○ (접수일) 2023. 4. 6(목) ~ 7(금)

○ (제출서류) 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\* ②사업계획서\*\* ③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 ④정관·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 자료

\*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서식 1 참조

\*\*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별표 2(작성요령) 참조

### <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>

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⇒ 1부

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·규약 ⑤ 재무제표 등 ⇒ 원본 1부, 사본 15부  
및 이동식 저장매체(USB) 1벌

※ 사업계획서 구성 : 사업계획서 요약문(25p 이내), 제1권(신청기관 명세, 조직, 재무), 제2권(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규모)

\* 제1권, 제2권 합쳐 200쪽 넘을 수 없으며, 필요시 부속서류 제출가능

○ (제출방식)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

- 담당자 : 김계영 주무관(02-2110-1523)

##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## □ 심사위원회 구성(안)

○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15인 이내로 구성되며(세부사항 비공개), 코로나19 확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 중 교체 가능

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2. 정부,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(협회, 조합)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
3.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
4.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
5.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※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

## □ 심사위원 직무

- 서류심사, 현장실사,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중요 심사항목·계량평가 항목 '적합'/'부적합' 여부 판정 및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

## 4

###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

## □ 서류 심사

-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 3에 명시된 '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'에 따라 심사

## □ 현장 실사
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신청 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비·설비·관련 시스템 등 실사

※ 1社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현장 실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

## □ 종합 심사

- (청문) 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(예 : 최고 정보보호책임자)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·응답 실시
- (평가)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,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·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'적합/부적합' 판정,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

## 5

### 심사항목 및 지정 기준

- (심사항목) 최신 기술·보안 이슈 등을 반영한 87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- (점수평가제)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(21개)과 계량평가 항목(2개)에 대해 '적합' 평가를 받고,

- 나머지 심사항목(64개)에 대해 1,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'지정'(조건 부과 가능)
-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'부적합' 시 총점과 상관없이 미지정
-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'적합', 총점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(조건부 지정 가능)

<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>

심사사항	세부 심사기준	배점(점)
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계획	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	90
	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	220
	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·보안 및 관리	160
	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	130
	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	80
	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	50
	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(중요심사항목)*	적합/ 부적합
	접속정보의 위조·변조 방지	60
	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	60
기술적·재정적 능력	기술적 능력(계량평가 항목)*	적합/ 부적합
	재정적 능력(계량평가 항목)*	적합/ 부적합
설비규모의 적정성	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·관리 및 보호 설비	20
	대체수단 생성·발급 및 관리 설비	20
	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	40
	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	30
	화재·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	40
합계		1,000

## 6

## 심사 이후 절차

### 방통위 의결

-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 기관에 대한 본인확인 기관 지정 여부 의결(필요 시 조건 부과)

### 지정서 교부

- (조건이 부과된 경우) 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고,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 교부
- (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) 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